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실효성이 낮은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업무로 지정·운영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내 용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서울의료원”이라 한다) 감사실에서는 서울의료원 「감사규정」 제3조 제4항 및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에 따라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및 내규에서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표 1]과 같이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등 9개 업무로 정하고 있고,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2,210개 사업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별 실시현황

연번	일상감사 대상업무	계			2015		2016		2017		2018. 4.	
		실시건수	의견제시	의견제시율	실시건수	의견제시	실시건수	의견제시	실시건수	의견제시	실시건수	의견제시
	계	2,210	65	2.9%	471	7	696	10	706	40	337	8
1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53	—	0%	2	—	13	—	25	—	13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계획	24	2	8.3%	3	—	5	—	14	2	2	—
3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3	—	0%	1	—	—	—	2	—	—	—
4	매 건당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의 지출	1,276	35	2.7%	284	1	403	3	415	26	174	5
5	예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약 체결 및 주요 변경	670	22	3.3%	134	5	218	2	186	12	132	3
6	결산 가결산 및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24	—	0%	17	—	6	—	1	—	—	—
7	중요한 물자 및 자산취득과 매각에 관한 사항	36	—	0%	2	—	—	—	31	—	3	—
8	회계단위의 설정 및 폐쇄	0	—	—	—	—	—	—	—	—	—	—
9	기타 일상감사 요구 사업	124	6	4.8%	28	1	51	5	32	—	13	—

한편 서울의료원은 감사실장을 포함한 3명이 자체감사와 외부감사 수감, 직원 감찰 및 청렴 등의 감사업무와 일상감사를 병행하는 형편이므로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하기 곤란한 주요사업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범위와 규모로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정하고 불필요한 대상업무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에서는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2,210개 사업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표 2]와 같이 감사인력 1인당 일상감사 실시 사업수가 737건으로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반면, 위법·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감사의견 제시는 65건으로 2.9%에 불과하였으며, 같은 기간 대상업무별 일상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이 ‘회계 단위의 설정 및 폐쇄’ 업무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일상감사 실적이 없고,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 4개 대상업무는 감사의견 제시율이 0%로서 일상감사의 실효성이 낮은 업무를 그 대상으로 정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실시현황

구 분	서울 교통공사	서울 시설공단	농수산 식품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서울 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일상감사 실시 사업수 (2015.1.~2018.4.)	6,955	1,761	1,214	4,011	1,442	2,210
감 사 인 력	28	19	5	18	4	3
감사인력 1인당 일상감사 실시 사업수	248	93	243	223	361	737

조치할 사항

서울의료원 원장은 일상감사 실적이 없거나 감사의견 제시율이 낮은 업무 등에 대하여는 기관 실정 및 특성, 감사인력을 고려하여 일상감사 대상업무 존치 여부를 재 검토 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